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14
------------	------

발의연월일 : 2017. 5. 24.

발 의 자 : 이동섭 · 이찬열 · 장정숙
황주홍 · 김광수 · 송기석
박준영 · 정인화 · 김중로
박선숙 의원(10인)

제안이유

이스포츠법이 시행된 이래 이스포츠 문화가 점차 대중화되고 전국 각지에서 이스포츠 대회가 개최되는 등 지역 이스포츠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 이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 경기시설은 매우 부족하며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 또한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이스포츠시설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의 근거조항이 있으나 지역에 많은 수의 이스포츠시설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은 많은 재원 부담을 수반하게 되는 만큼 이스포츠시설의 정의규정에서 “전문 이스포츠시설”과 “생활 이스포츠시설”을 분리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이미 전국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업소 중 우수한 시설을 갖춘 업소를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

반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임.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이스포츠 중기·장기 진흥 기본계획에 이스포츠 관람객의 편익증대를 위한 이스포츠 시설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이스포츠 문화 활성화와 더불어 시장 확대를 통한 이스포츠산업 부흥의 저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스포츠시설에 대한 정의조항을 “전문 이스포츠시설”과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구분하여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제5호 등).
- 나. 이스포츠 중기·장기 진흥 기본계획상에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8호).
- 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의 일부를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4항).
- 라.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생활 이스포츠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제3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시설을 말한다”를 “시설로써 “전문 이스포츠시설”과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구분한다”로 한다.

제2조에 제5호의2와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호의 이스포츠시설 중 “전문 이스포츠시설”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경기 대회의 개최와 이를 관람하기 위해 필요한 이스포츠시설을 말한다.

5의3. 제5호의 이스포츠시설 중 “생활 이스포츠시설”은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스포츠시설을 말한다.

제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제8조제3항 전단 중 “구축할 수 있다”를 “구축하거나 기존시설을 개선 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생활 이스포츠시설

의 확산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업소의 일부를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업소의 지정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 략)</p> <p>5.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장 등의 <u>시설</u>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시설</u> <u>로써 “전문 이스포츠시설”과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구분한다-</u></p>
<u><신 설></u>	<p><u>5의2. 제5호의 이스포츠시설 중 “전문 이스포츠시설”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경기 대회의 개최와 이를 관람하기 위해 필요한 이스포츠시설을 말한다.</u></p>
<u><신 설></u>	<p><u>5의3. 제5호의 이스포츠시설 중 “생활 이스포츠시설”은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스포츠시설을 말한다.</u></p>
<p>6. ~ 7. (생 략)</p> <p>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p>	<p>6. ~ 7. (현행과 같음)</p> <p>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신 설>

8. (생 략)

③ (생 략)

제8조(자금지원 등) ① · ② (생 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이스포츠 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1. ~ 7. (현행과 같음)

8.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자금지원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구축하거나 기존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생활 이스포츠시설의 확산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업소의 일부를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u>할 수 있다.</u>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3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13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 업소의 지정</u>